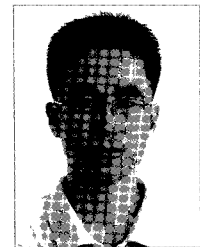


닭고기 등급판정 기준 개정 및 현황

전 세계 한해 생산되는 닭고기가 약 7천4백만 톤으로 1인당 약 10.7kg을 소비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과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으로 양계산업이 위축되어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닭고기 가격이 상승했으나 4, 5월 병아리 입식이 늘어나면서 현재 산지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닭고기 수입량도 전년 대비 12.1% 증가로 한동안 닭고기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렇듯 닭고기 가격 변동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병아리 입식 증가 등 시장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도 크게 좌우된다. 즉 우수하고 품질 좋은 닭고기를 생산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가격적 메리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들도 닭고기 품질에 따른 차등된 가격으로 구매하지 못하고 닭고기 브랜드 및 가격만 보고 구매하고 있다. 앞으로 닭고기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두고 유통이 된다면 소비자들도 그에 합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할 것이며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를 브랜드에 접목한다면 더욱더 닭고기 브랜드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 유통시장의 절반 이상은 대형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형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대형업체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 및 기타 소형 판매장 등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외 지역 및 급식납품업체에서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 유통을 위



이진석 과장
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관리팀

해 제도적 개선의 요구와 부분육 거래 활성화 위해 닭고기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 실시했다.

2011년 6월부터 닭 부분육 등급판정 기준을 닭도체 등급판정 기준과 같이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편입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닭도체등급판정의 결과를 부분육화 할 경우 도체상태의 등급판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로

등급판정 받은 닭도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등급판정 시행업체에서 해당 닭도체를 이용하여 부분육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또한 소규모 육가공업체에서는 등급판정 시행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후 등급판정 받은 닭도체를 이용하여 부분육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때 제품에 등급판정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표 1〉 닭고기 등급판정 기준 개정 내용

		구분	이전	현행
등급기준	닭도체		1등급, 1등급, 2등급	유지
	부분육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가공절차	닭도체		닭도체 등급으로 부분육 등급표시 못함	닭도체 등급판정의 결과를 부분육화 할 경우 도체상태의 등급판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
	부분육		등급판정 받지 않은 닭도체로 부분육 작업하여 등급판정 신청	유지
생산공정관리	생산공정		규정에 의한 관리	업무처리절차 제정
	작업공정		-	등급판정신청자는 등급판정 받은 닭도체를 이용하여 등급판정 시행업체로 지정받은 작업장에서 가공·처리할 수 있다.
원료육 확인	닭도체		2일이내의 원료육	롯데당 도체 10수의 토리미터 측정(평균) 값이 6.0 이상은 A급, 4.0 이상 6.0 미만은 B급, 4.0 미만은 C급으로 판정한다.
	부분육			48시간이내의 원료육

〈표 2〉 표본 닭부분육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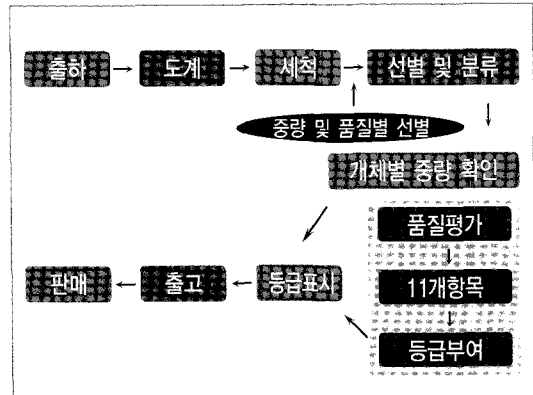
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A급의 것이 80% 이상이고, B급 이상의 것이 90% 이상이어야 함(나머지는 최소기준 이상)
2등급	A급의 것이 70% 이상이고, B급 이상이 것이 90% 이상이어야 함(나머지는 최소기준 이상)

2011년 닭고기 출현율을 보면 닭고기 등급판정 적용 25개 업체에서 생산한 4백48만5천수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했으며, 등급판정 결과 1+등급 61만9천수(13.9%), 1등급은 3백67만6천수(82.0%)를 판정했다.

전월(24개 업체, 4,546)대비, 1.3%(6만1천수) 감소했지만, 전년동기(24개 업체, 4백11만2천수)대비 10.6%(43만4천수) 증가했다. 금월까지의 누계는 1천9백25만1천수로 전년 동기 누계(1천7백58만3천수)대비 9.5%(1백66만8천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등급이 2011년에 감소한 이유는 부분육 등급기준에서 1+등급을 삭제하고 1등급, 2등급으로 개정 시행했기 때문이며, 1+등급의 닭도체를 이용하여 부분육화한 닭고기 제품은 1+등급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하므로 해당 등급의 출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등급이 적게 출현한 이유는 닭고기 등급판정 시행업체에서 원하는 등급기준에



〈그림 1〉 등급닭고기 생산 체계도

해당되는 닭을 선별하여 등급판정 신청을 하고 있어 2등급에 대한 닭고기 유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그림 1〉 참조).

앞으로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닭고기 등급판정이 확대되어 등급별 차등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닭고기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닭고기 품질에 따른 적절한 가격이 산정되어 소비자가 구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3〉 닭고기 등급판정 출현율

(단위 :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등급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전년누계 (2010. 1~12월)	45,968,860 (100.0)	17,495,055 (38.1)	27,510,361 (59.8)	963,444 (2.1)
금년누계 (2011. 1~5월)	19,250,530 (100.0)	1,932,564 (10.0)	16,026,534 (83.3)	1,291,432 (6.7)
전년동기 (2010. 5월)	4,112,199 (100.0)	1,582,632 (38.5)	2,463,385 (59.9)	66,182 (1.6)
전월(4월)	4,546,068 (100.0)	421,350 (9.3)	3,945,433 (86.8)	179,285 (3.9)
당월(5월)	4,485,271 (100.0)	619,276 (13.8)	3,676,055 (82.0)	189,940 (4.2)